

조선 영조 연간 이조낭선(吏曹郎選) 개혁과 홍문관 인사제도

김성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선후기 정치문화사 전공
sonnykim@korea.kr

- I. 머리말
 - II. 영조 초반 정국과 홍문관 인사
 - III. 홍문관 인사 폐단과 개혁의 발단
 - IV. 이조낭선 개혁과 홍문관원의 선발
 - V. 맺음말
-

I. 머리말

‘학문을 널리 펴는 관사’라는 의미의 홍문관은 조선 시기 궁중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헌(文翰)을 관리하며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¹ 홍문관은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 삼사로 꼽혔으며, 청요직의 상징과도 같았던 중요 기구이다. 현대 국가의 권력 기관과 같이 지대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거나 막대한 재정을 관장하지도 않았던 이 관서가 조선시대 정치제도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조선의 정치 운영 원리와 지향을 되짚어보는 일과 닮은꼴이다. 이는 국왕 혹은 특정 정치세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 방지와 제도적 효용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언론제도 수립 및 주요 언론기구로서 홍문관의 위상 정립이 ‘유교 정치의 이상 구현’이라는 동계의 문제의식에 의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라는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가운데, 이를 조선 후기 역사의 흐름 위에서 구명하기 위해 영조 연간에 추진된 이조낭선(吏曹郎選) 개혁과 홍문관의 위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홍문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삼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 기관의 운영 양상에 투영된 조선시대 정치문화의 특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홍문관의 설립 연혁과 기능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된 이래 그 실질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진행되었다.³ 이 연구들을 통해 사림의 등장과 함께 홍문관이 언론과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2-C14).

1 『弘文館志』 建置第一 沿革, “掌內府經籍治文翰備顧問”.

2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本館錄과 都堂錄을 모아 정리한 『登瀛錄』(奎 997-v.1-4)을 주요 전거로 하여 홍문관원 인선기록을 분석했으며, 「본관록」과 「도당록」을 아울러 지칭할 때는 『弘文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문관을 동시에 관장하는 주요 언론기구로 성장해 나아간 계기가 분석되었다. 특히 「도당록(都堂錄)」 입록자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진행됨으로써, 문과 급제자가 당상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작용했던 홍문관의 위상 및 별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진척되었다.⁴ 문과 급제자의 분관(分館) 및 관로 진출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와 같은 홍문관의 특수한 위상이 거듭 확인되었다.⁵

한편 탕평 정치의 전개 상황에 대한 고찰과 연동하여 홍문관을 통한 정치세력 재생산 구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⁶ 아울러 조선후기 문관 인사제도의 개혁이 추동한 홍문관의 기능 및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⁷ 이러한 연구는 숙종 연간 이래 국왕이 봉당 간 시비명변(是非明辨)의 판정자로 자임하여 당론을 배격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봉당 간의 극한 대립을 초래했던 환국 정치에 대한 연구 성과⁸ 이후 영조 연건을 거치며 탕평의 실질적인

-
- 3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제5권(1970); 박영준, 「홍문관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2); 최승희, 「홍문록고」, 『대구사학』 제15·16권 제1호(1978); 최이돈, 「성종대 홍문관의 인관화 과정」, 『진단학보』 제61권(1986b); 최승희, 「홍문관의 인관화」, 『조선시대사학보』 제18권(2001).
 - 4 남지대, 「조선후기의 당쟁과 청요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서울: 일조각, 1997).
 - 5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2020).
 - 6 우경섭, 「영·정조대 홍문관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제39권(1998); 임성자, 「숙종대 弘文錄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 7 이근호, 「조선시대 이조전랑의 인사실태」, 『한국학논총』 제31권(2009); 김현정, 「17~18세기 銓郎制 운영과 1741년 銓郎法 개정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101권(2022); 나영훈, 「조선후기 이조전랑의 인사실태와 정치적 위상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제86권(2022).
 - 8 정경희,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한국사론』 제30권(1993); 이희환, 「肅宗과 己巳換局」, 『전북사학』 제8권(1984); 이희환, 「庚申換局과 金錫胄」, 『전북사학』 제10권(1986); 이희환, 「甲戌換局과 肅宗」, 『전북사학』 제11·12권 합집(1989); 홍순민,

구현을 통해 봉당 간의 대결을 지양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 구도 재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선행연구의 입론에 기초한 것이다.⁹

본고 또한 이같이 17~18세기 조선 정치사에 착목한 기왕의 연구 성과와 주요 입론에 의지하여 영조 연간에 진행된 탕평 정치의 맥락 위에서 홍문관 인사의 추이를 보다 세심히 훑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홍문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영조 초반의 정국을 구성했던 주요 정파의 행보를 재확인하고, 그로부터 탕평의 도입과 이조낭선 개혁을 추동한 본격적인 계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탕평의 기초를 부식하고 왕권의 신장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조낭선 개혁이 홍문관의 권한과 위상에 어떠한 변화를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에도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다. 조선후기의 홍문관은 정치세력을 재생산하는 연원입과 동시에 우문 정치의 조력자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기에 그 본연의 위상은 단순히 왕권의 신장제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조전랑에게 부여된 특권의 해체와 관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이조낭선 개혁의 과정에서 홍문관이 직면했던 변화와 조정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일은 이 시기 추구되었던 탕평 정치의 이상과 현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제15권(1986); 이희환, 『朝鮮後期黨爭研究』(과주: 국학자료원, 1995); 박광용, 『肅宗代 己巳換局에 대한 검토: 黨論書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29권(1996).

9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제56권(1983); 박광용,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한국사론』 제10권(1984);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제111권(1986); 이희환, 「英祖代 蕩平策의 실상(上)」, 『전북사학』 제16권(1993); 이희환, 「英祖代 蕩平策의 실상(下)」, 『전북사학』 제17권(1994);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과주: 지식산업사, 1997); 이근호, 「英祖代 蕩平派의 形成과 閥閥化」, 『조선시대사학보』 제21권(2002).

II. 영조 초반 정국과 홍문관 인사

조선의 언론제도는 왕도정치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삼사로 통칭되는 이 시기의 언론기구 중에서도 홍문관은 왕정의 잘잘못을 논하고, 백관의 언동을 규찰하는 정치적 기능 이외에도 양사(兩司)의 언론 활동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정의 문헌을 관장하며, 경연을 통해 군주의 학문 성취에 일조하는 막중한 책임을 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문과 정치를 겸장하는 홍문관의 위상은 학문과 정치의 밀접한 연계 구조 위에서 형성된 조선시대 정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을 상징한다 하겠다.¹⁰

1463년(세조 9) 예문관 부속의 장서 기관으로 설립되었던 홍문관은 성종 연간을 거치며 집현전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으며, 소속 관원들은 경연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의 국정 자문에 응하고 간쟁을 시행했다. 이처럼 왕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홍문관의 직능과 특성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큰 변동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영조 대에 이르러 구현된 새로운 정국 운영 원리와 맞물려 여하한 재조정 과정을 겪게 된다.

주지하듯 영조는 붕당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어렵사리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치세 내내 붕당의 폐습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영조는 이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 곧 탕평을 통해 왕권의 절대성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 이보다 앞선 숙종 연간에서부터 탕평 정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림의 공론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당 전제적 정국 형태가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띠었다.

10 우경섭, 앞의 글(1998), 138쪽 참조.

그러나 봉당 간의 공론을 조제하여 공존의 방안을 찾는 대신 군주가 의리의 시비를 분별하여 특정 당파에게 집권 명분을 부여하는 형태의 한국 정치는 봉당 간의 반목과 대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정국 운영 방식은 1728년(영조 4)의 무신란(戊申亂)을 겪은 이후에야 기유처분(己酉處分)이라는 전환점을 거치며 탕평 정치로 대체될 수 있었다.¹¹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조가 즉위한 1724년 8월부터 1729년 기유처분이 전까지의 단계를 두고, '탕평을 표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이전과 같은 한국 정치의 형태를 취했던 시기'로 분석했다.¹² 소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왕위에 오른 영조는 이듬해(1725) 을사처분(乙巳處分)을 통해 신임옥사(辛壬獄事)를 무옥(誣獄)으로 판정했으며, 이로 인해 희생된 김창집(金昌集) 등의 관작을 추복하고 연루된 인사들을 신원했다. 영조는 이를 계기로 자신을 왕세제로 옹립했던 노론 인사를 적극 등용했으나, 동시에 노소 당쟁의 조정을 위해 소론 지도자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 노론 온건파 홍치중(洪致中) 등과 같이 탕평을 부지할 인사도 함께 기용했다. 그러나 노론의 영수 민진원(閔鎭遠)과 정호(鄭澹)가 신임옥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홍치중을 압박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등 봉당 간의 대립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1727년 영조는 민진원과 정호 이하 여러 노론 관료들을 파면하고, 이광좌를 재기용함으로써 소론 위주로 정국을 재편했다. 이 정미환국(丁未換局)을 계기로 소론계가 중심이 된 탕평론자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들에 의해 노론의 일당 전제 기도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소론 조문명(趙文命) 계열과 노론 홍치중 계열 같이 국왕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정치집단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탕평의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에 착수했다.¹³

11 정만조, 앞의 글(1983) 참조.

12 박광용, 앞의 논문(1984).

이상과 같이 영조 즉위 직후의 정국에 대한 설명을 개관했을 때, 거듭된 환국에 수반된 권력 재배치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묵은 벽돌을 빼낸 자리에 새로운 벽돌을 끼워 넣듯이 당색에 따른 정치세력의 교체가 과연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이제 『홍문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 시기 정국의 흐름에 따른 정파의 집권 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영조 즉위를 전후로 이루어진 홍문관 관원 인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은 1723~1725년(경종 3~영조 1)에 작성된 『홍문록』의 권점자·입록자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1-1723~1725년 권점자·입록자 내역¹⁴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초직 | 제수일 |
|----------------------------------|----|------|----|-----|----|----|----|-----|----|-----|
| 계묘록 (1723. 8. 4.) 「본관록」 | 좌목 | 행부제학 | 소론 | 이진유 | 명단 | 8점 | 소론 | 오수원 | | |
| | | 응교 | 소론 | 박필원 | | 7점 | 소론 | 홍정상 | | |
| | | 부응교 | 소론 | 이정필 | | 7점 | 소론 | 이진급 | | |
| | | 교리 | 소론 | 이현장 | | 7점 | 소론 | 이현장 | | |
| | | 부교리 | 소론 | 윤유 | | 7점 | 소론 | 조진희 | | |
| | | 부교리 | 소론 | 오명신 | | 7점 | 소론 | 조최수 | | |
| | | 부수찬 | 소론 | 조익명 | | 7점 | 소론 | 김홍석 | | |
| | | 부수찬 | 소론 | 송진명 | | 7점 | 소론 | 이광보 | | |
| | | . | . | . | | 7점 | 남인 | 강박 | | |
| | | . | . | . | | 7점 | 소론 | 이거원 | | |
| | | . | . | . | | 7점 | 소론 | 조지빈 | | |
| | | . | . | . | | 7점 | 소론 | 박필기 | | |
| | | . | . | . | | 7점 | 소론 | 이보옥 | | |
| | | . | . | . | | 7점 | 소론 | 성덕윤 | | |

13 박광용, 「조선후기 당쟁과 정국운영론의 변천: 18세기~19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4 <표1>에 기재된 권점자 및 입록자의 당색은 김세봉, 「朝鮮時代 黨派 分類表」, 『동양고전연구』 제1권(1993) 등 관련 연구 성과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연대기 사료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초직 | 제수일 |
|-----------------------------------|----|-----------------------------------|----|------|-----|----|-----|-----|-----|---------------|
| 갑진록 (1724. 3. 18.) 「도당록」 | 좌목 | 우의정 | 소론 | 이광좌 | 명단 | 5점 | 소론 | 오수원 | 교리 | 1724. 7. 9. |
| | | 행이조판서 | 소론 | 유봉휘 | | 4점 | 남인 | 조덕린 | 수찬 | 1725. 3. 7. |
| | | 호조판서 | 소론 | 조태억 | | 4점 | 소론 | 홍정상 | 부수찬 | 1724. 윤4. 5. |
| | | 우참찬 | 소론 | 오명준 | | 4점 | 소론 | 이진급 | 부교리 | 1724. 4. 19. |
| | | 이조참판 | 소론 | 이진유 | | 4점 | 소론 | 조진희 | 부수찬 | 1724. 4. 13. |
| | | 이조좌랑 | 소론 | 송진명 | | 4점 | 소론 | 조최수 | 수찬 | 1724. 4. 27. |
| | | . | . | . | | 4점 | 소론 | 김홍석 | 未詳 | 未詳 |
| | | . | . | . | | 4점 | 소론 | 이광보 | 수찬 | 1724. 4. 29. |
| | | . | . | . | | 4점 | 남인 | 강박 | 부수찬 | 1724. 11. 20. |
| | | . | . | . | | 4점 | 소론 | 이거원 | 未詳 | 未詳 |
| | | . | . | . | | 4점 | 소론 | 윤광익 | 부수찬 | 1724. 12. 14. |
| | | . | . | . | | 4점 | 소론 | 조지빈 | 부수찬 | 1724. 3. 22. |
| | | . | . | . | | 4점 | 소론 | 박필기 | 未詳 | 未詳 |
| | | . | . | . | | 4점 | 소론 | 이보옥 | 未詳 | 未詳 |
| | | . | . | . | | 4점 | 소론 | 신치운 | 未詳 | 未詳 |
| | | . | . | . | | 4점 | 소론 | 이광덕 | 부교리 | 1724. 윤4. 22. |
| | | . | . | . | | 4점 | 소론 | 윤용 | 부수찬 | 1724. 윤4. 15. |
| | | . | . | . | | 4점 | 소론 | 성덕윤 | 부수찬 | 1724. 6. 17. |
| | | . | . | . | | 4점 | 소론 | 이진수 | 수찬 | 1724. 4. 5. |
| | | 을사록 (1725. 3. 15.) 「본관록」 | 좌목 | 행부제학 | | 노론 | 김재로 | 명단 | 5점 | 노론 |
| 부응교 | 노론 | | | 신방 | 4점 | 노론 | 권적 | | | |
| 교리 | 노론 | | | 이기진 | 4점 | 노론 | 박사성 | | | |
| 부교리 | 노론 | | | 홍현보 | 4점 | 노론 | 김상석 | | | |
| 부교리 | 노론 | | | 서종섭 | 4점 | 노론 | 김용경 | | | |
| . | . | | | . | 4점 | 노론 | 황재 | | | |
| . | . | | | . | 4점 | 노론 | 서종급 | | | |
| . | . | | | . | 4점 | 노론 | 이유 | | | |
| . | . | | | . | 4점 | 노론 | 윤심형 | | | |
| . | . | | | . | 4점 | 노론 | 김조택 | | | |
| . | . | . | 4점 | 노론 | 이현록 | | | | | |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초직 | 제수일 |
|----------------------------------|----|-------|----|-----|----|----|----|-----|-----|--------------|
| 을사록 (1725. 7. 6.) 「도당록」 | 작목 | 좌의정 | 노론 | 민진원 | 명단 | 5점 | 노론 | 이유 | 부교리 | 1725. 7. 7. |
| | | 우의정 | 노론 | 이관명 | | 5점 | 노론 | 이현록 | 부교리 | 1725. 7. 12. |
| | | 행이조판서 | 노론 | 이의현 | | 5점 | 노론 | 이병태 | 부수찬 | 1725. 7. 7. |
| | | 우참찬 | 노론 | 황일하 | | 4점 | 노론 | 권적 | 부수찬 | 1725. 8. 10. |
| | | 이조참의 | 노론 | 유척기 | | 4점 | 노론 | 박사성 | 부수찬 | 1725. 7. 12. |
| | | 이조정랑 | 노론 | 홍현보 | | 4점 | 노론 | 김상석 | 수찬 | 1725. 8. |
| | | . | . | . | | 4점 | 노론 | 김용경 | 수찬 | 1725. 7. 7. |
| | | . | . | . | | 4점 | 노론 | 황재 | 수찬 | 1725. 8. 4. |
| | | . | . | . | | 4점 | 노론 | 서종급 | 수찬 | 1725. 8. 15. |
| | | . | . | . | | 4점 | 노론 | 윤심형 | 부수찬 | 1725. 7. 7. |

〈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정국의 전개 추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영조 즉위를 전후로 실시된 인선 작업의 결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보인다. 1723년(경종 3) 8월에 작성된 「본관록」과 이듬해 3월에 작성된 「도당록」을 살펴보면, 권점자와 입록자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 소론계 인사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종 대 형성된 소론 우위의 정국이 영조 즉위 직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정황을 설명하는 내역이라 하겠다. 반면, 1725년(영조 1) 3월 을사처분이 단행된 후 15일 만에 작성된 「본관록」과 「도당록」에 수록된 인사들은 노론 일색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본관록」 권점을 행한 이들은 행부제학 김재로(金在魯) 이하 신방(申昉), 이기진(李箕鎭), 홍현보(洪鉉輔), 서종섭(徐宗燮) 5인인데, 이들은 모두 1720년 10월에 작성된 경자록 「도당록」에 들어 수찬, 부교리 등을 역임했던 인사들이다. 이 같은 홍문관 인사의 일변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725년(영조 1) 1월 승지 윤봉조(尹鳳朝)가 상소를 올려 신임옥사와 관련된 시비를 명변하고 이와 관련된 소론 인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¹⁵ 이에 영조는 곧바로 삼사의 제신(諸臣)을 특과(特罷)했다. 그는 이어 비망기

를 내려 능행(陵幸)할 때 위패(違牌)한 것을 사유로 이조 참의 조원명(趙遠命)을 파직하고 윤봉조에게 대신하도록 했는데¹⁶, 다음 날 윤봉조는 새 인선을 주도하여 노론계 인사를 언관직에 대거 기용했다.¹⁷ 이때 홍현보와 서종섭은 각각 수찬과 부교리로 제수되어 홍문관에 입성했다. 동시에 영조는 민진원을 비롯한 노론계 인사 다수를 서용하거나 직첩 환급 및 복관을 시행했으며¹⁸, 1월 22일에는 민진원을 이조판서로 제수한 후에 다시 한번 대규모 인사를 진행시켰다.¹⁹ 3월 2일에는 정호(鄭澹)와 민진원의 요청에 따라 신임옥사를 소론에 의한 무고로 판정하여 김창집·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의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致祭)했으며, 당시 죄를 입은 사람을 일체 신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²⁰ 이 같은 을사처분의 결과 노론 집권의 명분과 정당성이 마련되었으며, 다음 달 정호, 민진원, 이관명(李觀命)을 삼정승에 제수하는 것으로써 노론 정권의 구성을 완료했다.²¹

이렇게 노론계 인사들이 의정부 이하 홍문관 안팎의 요직에 대거 포진하는 가운데 작성된 「본관록」은 자연스레 노론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4개월 후 이어진 「도당록」 인사에서는 전라 감사로 제수되어 외방으로 나간 김조택 이외에는 「본관록」 입록자 전원이 「도당록」에 득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당록」 완성 다음 날인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이내에 수찬 이하 부수찬, 부교리 등 관직에 전원 제수되고 있음이 보인다. 이처럼 환국에 수반한 인사 조치의 일환으로

15 『英祖實錄』 1년(1725) 1월 11일 1번째 기사.

16 『英祖實錄』 1년(1725) 1월 11일 2번째 기사.

17 『英祖實錄』 1년(1725) 1월 12일 6번째 기사.

18 『英祖實錄』 1년(1725) 1월 12일 5번째 기사.

19 『英祖實錄』 1년(1725) 1월 22일 1번째 기사; 『英祖實錄』 1년(1725) 1월 23일 1번째 기사.

20 『英祖實錄』 1년(1725) 1년 3월 2일 3번째 기사.

21 『英祖實錄』 1년(1725) 4월 23일 2번째 기사.

삼사 관원의 교체가 급격히 이행되는 가운데 홍문관 관원도 일변하여 자과의 신진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구조가 신속히 마련되었던 것이니, 홍문관을 통한 붕당의 재생산 구조가 집권과 거의 동시간대에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조는 상기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노론 위주의 정국 구조 속에서 소론에 대한 핍박이 격화되고 붕당 타과의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1727년(영조 3) 정미환국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광좌·조태억 등 소론의 지도자급 인사를 다시 불러 정승에 특제(特除)하고, 소론계 조문명, 송인명(宋寅明) 등은 물론 탕평의 취지에 동조하는 노론·남인계 인사들을 모아 탕평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727년 12월의 「본관록」과 1728년 1월의 「도당록」 내용을 보면 다시 소론계 인사들이 다수 입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사이 노론과 남인의 당색을 가진 이들도 확인된다.

표2- 1727~1728년 관점자·입록자 내역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초직 | 제수일 |
|------------------------------------|----|-----|----|-----|----|----|----|-----|----|-----|
| 정미록 (1727. 12. 17.) 「본관록」 | 좌목 | 부제학 | 소론 | 송진명 | 명단 | 4점 | 소론 | 조현명 | | |
| | | 부응교 | 소론 | 정석오 | | 4점 | 소론 | 박문수 | | |
| | | 교리 | 소론 | 이광보 | | 4점 | 노론 | 서명빈 | | |
| | | 부교리 | 소론 | 조진희 | | 3점 | 소론 | 윤동형 | | |
| | | | | | | 3점 | 노론 | 조명교 | | |
| | | | | | | 3점 | 소론 | 신치근 | | |
| | | | | | | 3점 | 소론 | 조적명 | | |
| | | | | | | 3점 | 남인 | 홍경보 | | |
| | | | | | | 3점 | 소론 | 윤상백 | | |
| | | | | | | 3점 | 소론 | 임수적 | | |
| | | | | | | 3점 | 소론 | 이종성 | | |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초직 | 제수일 |
|-----------------------------------|----|-------|----|-----|----|----|-------|-----|-----|--------------|
| 무신록 (1728. 1. 27.) 「도당록」 | 좌목 | 영의정 | 소론 | 이광좌 | 명단 | 6점 | 소론 | 조현명 | 부교리 | 1728. 1. 27 |
| | | 좌의정 | 소론 | 조태역 | | 6점 | 노론 | 서명빈 | 부교리 | 1728. 1. 28 |
| | | 행이조판서 | 소론 | 이태좌 | | 5점 | 소론 | 윤동형 | 수찬 | 1728. 11. 26 |
| | | 우참찬 | 소론 | 김시환 | | 5점 | 노론 | 조명교 | 수찬 | 1728. 3. 7 |
| | | 이조참판 | 소론 | 윤순 | | 5점 | 소론 | 신치근 | 未詳 | 未詳 |
| | | 이조참의 | 소론 | 윤혜교 | | 5점 | 남인 | 오광운 | 수찬 | 1728. 2. 11 |
| | | 이조정랑 | 소론 | 여선장 | | 5점 | 소론(?) | 권부 | 수찬 | 1728. 5. 27 |
| | | | | | | 5점 | 소론 | 조적명 | 수찬 | 1728. 2. 3 |
| | | | | | | 5점 | 소북 | 윤취정 | 수찬 | 1728. 7. 9 |
| | | | | | | 5점 | 소론(?) | 한사선 | 未詳 | 未詳 |
| | | | | | | 5점 | 남인 | 홍경보 | 부수찬 | 1728. 2. 22 |
| | | | | | | 5점 | 소론 | 박문수 | 부수찬 | 1728. 1. 27 |
| | | | | | | 5점 | 소론 | 정우량 | 부수찬 | 1728. 1. 27 |
| | | | | | | 5점 | 소론 | 윤상백 | 未詳 | 未詳 |
| | | | | | | 5점 | 소론 | 김상성 | 부수찬 | 1728. 2. 11 |
| | | | | | | 5점 | 소론 | 서종옥 | 수찬 | 1728. 3. 7 |
| | | | | | | 5점 | 소론 | 임수적 | 부수찬 | 1728. 6. 6 |
| | | | | | | 5점 | 소론 | 권혁 | 부수찬 | 1728. 8. 3 |
| | | | | | | 5점 | 소론 | 이종성 | 정자 | 1728. 1. 28 |
| | | | | | | 5점 | 소론 | 이현모 | 부수찬 | 1728. 2. 22 |

〈표2〉에 기재된 인사 가운데는 향후 왕권을 보위하고 탕평 정국을 이끄는 주요 관료로 성장하는 소론계의 조현명(趙顯命), 박문수(朴文秀), 이종성(李宗城), 정우량(鄭羽良)과 남인계의 오광운(吳光運), 홍경보(洪景輔) 등 인사가 기재되어 눈길이 간다. 특히 소론 완론의 지도자 정우량과 남인 청류계 오광운이 이때 「본관록」을 거치지 않고 「도당록」에 득참한 직후 요직에 진출하여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처럼 『홍문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각 시기별로 정국을 주도했던 정파의 집권과 퇴장 과정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Ⅲ. 홍문관 인사 폐단과 개혁의 발단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문관을 통한 붕당의 재생산 구조는 특정 정파의 집권과 맞물려 신속하게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용된 인사들은 언론의 최전선에서 반대파를 논핵하는 데 앞장섰으며, 후임 인선을 통해 자파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즈음 신임의리를 둘러싼 노소 간의 대립 기조는 보통 붕당의 의리를 대변하는 언관들의 논핵을 통해서 조성·심화되었는데 다음의 실록 기사를 통해 그 일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상이 등극한 처음 조정이 제반 정무를 시작하고 사류(士類)들은 모두 귀양지에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임징하(任徵夏)는 상복을 벗기도 전에 아산에서 올라와 도하(都下)에 거주했고, 이의천(李倚天)은 제일 먼저 대관으로 부르는 명을 받고 부임했다. 당시 토죄(討罪)하는 논계가 이의천에 의하여 발론된 것이 많았는데, 그 계문(啓文)의 작성은 거의 임징하가 주장했다. 민진원·이관명은 실권을 잡고 있는 대신으로서 매양 이 두 사람의 사한(詞翰)과 풍절(風節)을 칭찬하면서 권장하여 기용했는가 하면 조관빈(趙觀彬)은 지극한 원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흉당들에 대해 이를 갈고서 임징하·이의천이 토죄에 공이 있다는 것으로 역시 극력 추천하고 나섰다.²²

영조의 명으로 조정에 복귀한 전 지평 이의천과 임징하 등 노론계 인사들은 헌납, 정언, 장령 등 양사의 대관직을 오가면서 신임옥사에 연루된 소론 인사에 대한 토역(討逆)을 촉구했다.²³ 그리고 위 인용문에 보이듯

22 『英祖實錄』 1년(1725) 6월 1일 1번째 기사.

23 『英祖實錄』 즉위년(1724) 12월 2일 3번째 기사; 『英祖實錄』 1년(1725) 6월 13일 6번째

이들의 뒤에는 노론계 대신들이 있었다. 삼사의 대관들이 특정인을 공척하는 계청(啓請)을 올리면 이를 칭찬하고 독려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국왕의 윤허를 이끌어 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상대 당파에 대한 논핵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들에게는 그에 따른 사로(仕路)의 특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의 하단부를 마저 살펴보자.

이때 이의현(李宜顯)이 동전(東銓)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를 자못 억제했으므로 여기에 불평을 품은 자들이 민진원에게 이의현을 모함하게 되었고, 따라서 양가(兩家)가 의심을 일으켜 마침내 분당하고 말았다. …… 그러나 다만 사세를 관망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간혹 이의현의 당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민진원의 당에서 토역에 완만하다는 이유로써 비난했다. 이때에 이르러 회좌(會坐)하여 도당록(都堂錄)에 권점(圈點)을 치게 되었는데, 민진원·이관명이 조관빈과 서로 의논하여 본디 기록된 8인 외에 유복명(柳復明) 등 10인을 더 뽑아서 18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학사(學士) 임징하·이의천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이의현과 이병상(李秉常)이 이를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영선(瀛選)은 마땅히 정밀하게 뽑도록 힘써야 하는데 어찌 많이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서로 간에 재삼 논란했으나, 끝내 의견이 귀일되지 못했다. 이에 조관빈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파좌(罷坐)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홍문관 제학을 맡고 있었던 조관빈은 노론 4대신 조태채의 아들로써 신임옥사를 일으킨 소론계 인사들에 대한 큰 복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조관빈이 「본관록」 간택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이의천과

기사 등 참조.

임징하 등 「본관록」에 오르지 못한 10인을 추가로 득참시키려다 이를 제지하는 이조판서 이의현 등과 마찰을 빚고 파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같은 노론계 내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만들어진 『홍문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표3- 1725년 권점자·입록자 내역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
| 을사록 (1725. 3. 15.) 「본관록」 | 좌목 | 행부제학 | 노론 | 김재로 | 명단 | 5점 | 노론 | 이병태 |
| | | 부응교 | 노론 | 신방 | | 4점 | 노론 | 권적 |
| | | 교리 | 노론 | 이기진 | | 4점 | 노론 | 박사성 |
| | | 부교리 | 노론 | 홍현보 | | 4점 | 노론 | 김상석 |
| | | 부교리 | 노론 | 서종섭 | | 4점 | 노론 | 김용경 |
| | | . | . | . | | 4점 | 노론 | 황재 |
| | | . | . | . | | 4점 | 노론 | 서종급 |
| | | . | . | . | | 4점 | 노론 | 이유 |
| | | . | . | . | | 4점 | 노론 | 윤심형 |
| | | . | . | . | | 4점 | 노론 | 김조택 |
| 을사록 (1725. 7. 6.) 「도당록」 | 좌목 | 좌의정 | 노론 | 민진원 | 명단 | 5점 | 노론 | 이유 |
| | | 우의정 | 노론 | 이관명 | | 5점 | 노론 | 이현록 |
| | | 행이조판서 | 노론 | 이의현 | | 5점 | 노론 | 이병태 |
| | | 우참찬 | 노론 | 황일하 | | 4점 | 노론 | 권적 |
| | | 이조참의 | 노론 | 유척기 | | 4점 | 노론 | 박사성 |
| | | 이조정랑 | 노론 | 홍현보 | | 4점 | 노론 | 김상석 |
| | | . | . | . | | 4점 | 노론 | 김용경 |
| | | . | . | . | | 4점 | 노론 | 황재 |
| | | . | . | . | | 4점 | 노론 | 서종급 |
| | | . | . | . | | 4점 | 노론 | 윤심형 |

1725년(영조 1) 3월, 7월에 만들어진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 명단을 비교해보면, 상기했듯 전라 감사로 제수되어 나간 김조택 이외에는 출입자 없이 「도당록」 권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당록」 권점을 파악하여 물의를 일으킨 조관빈이 체직되어 낙향한 이후²⁴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도당록」 작성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개인의 이해관계와 당파적 논리에 따라 「도당록」 인선을 확장하려던 기도가 노론계 내부의 알력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이듬해에 열린 「도당록」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봉당의 논리에 따른 인사의 출입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1727년(영조 3) 4월 21일의 실록 기사 일부를 살펴보자.

「도당록」을 완성하여, 신노(申魯)·윤섭(尹涉)·이양신(李亮臣) 등 13인을 뽑았다. 이양신은 고 대사헌 이희조(李喜朝)의 아들이다. 이희조는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에게 수업하여 문순공(文純公)·권상하(權尙夏)와 함께 사람들의 종사가 되어 지촌선생(芝村先生)이라고 불리웠다. 신축년과 임인년의 화 때에 관새(關塞)로 귀양갔다 죽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양신이 석갈(釋褐)하고 조정에 들어가므로 사람들의 인망이 성대했는데, 미처 통청(通淸)하지도 않고서 바로 영선(瀛選)에 들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다.²⁵

상기 인용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이양신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노론의 학맥을 잇는 이희조(李喜朝)의 아들로서 이해 초에 치러진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 1등으로 급제했으며, 가문의 배경을 통해 얻은 인망을 바탕으로 「본관록」을 건너뛰고 바로 「도당록」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작성된 「도당록」의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그의 이름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英祖實錄』 1년(1725) 6월 7일 2번째 기사; 『英祖實錄』 1년(1725) 8월 15일 3번째 기사.

25 『英祖實錄』 3년(1727) 4월 21일 1번째 기사.

표4-1726~1727년 권점자·입록자 내역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
| 병오록 (1726. 11. 4.) 「본관록」 | 작목 | 부제학 | 노론 | 이기진 | 명단 | 5점 | 노론 | 민응수 |
| | | 응교 | 노론 | 윤심형 | | 4점 | 노론 | 서명구 |
| | | 교리 | 노론 | 박사성 | | 4점 | 노론 | 유겸명 |
| | | 부교리 | 노론 | 황재 | | 4점 | 노론 | 홍성보 |
| | | 수찬 | 노론 | 김상석 | | 4점 | 노론 | 조명택 |
| | | | | | | 4점 | 노론 | 이도원 |
| | | | | | | 4점 | 노론 | 이덕부 |
| | | | | | | 4점 | 노론 | 신로 |
| | | | | | | 4점 | 노론 | 홍봉조 |
| | | | | | | 4점 | 노론 | 윤섭 |
| 정미록 (1727. 4. 21) 「도당록」 | 작목 | 좌의정 | 노론 | 홍치중 | 명단 | 4점 | 노론 | 한현모 |
| | | 좌참찬 | 노론 | 이의현 | | 4점 | 노론 | 신로 |
| | | 이조판서 | 노론 | 심택현 | | 4점 | 노론 | 민응수 |
| | | 이조참의 | 노론 | 신방 | | 4점 | 노론 | 이양신 |
| | | 이조좌랑 | 노론 | 황재 | | 3점 | 노론 | 서명구 |
| | | | | | | 3점 | 노론 | 유겸명 |
| | | | | | | 3점 | 노론 | 이도원 |
| | | | | | | 3점 | 노론 | 조명택 |
| | | | | | | 3점 | 노론 | 이덕부 |
| | | | | | | 3점 | 노론 | 홍봉조 |
| | | | | | | 3점 | 노론 | 윤섭 |
| | | | | | | 3점 | 노론 | 심태현 |
| | | | | | | 3점 | 노론 | 조명익 |

이때 「도당록」에 오른 이양신은 이틀 후 종6품 부수찬에 제수되었으니²⁶ 급제 후 대단히 신속하게 요직에 기용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신임옥사를 일으킨 소론계 인사의 처벌을 요구하다²⁷ 정미환국 시 파면을

26 『英祖實錄』 3년(1727) 4월 23일 2번째 기사.

27 『英祖實錄』 3년(1727) 6월 9일 3번째 기사.

당했고²⁸, 2년 후인 1729년 5월 부수찬으로 복직한 직후 다시 김일경 등의 죄목을 12조항에 걸쳐 극렬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 경원부로 정배되는 등 당론의 비호에 열성적으로 투신했다.²⁹ 이양신과 함께 「도당록」에 오른 한현모 역시 부교리에 임명된 후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노론 4대신의 복직과 삭직을 갈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³⁰ 윤섭 또한 이광좌 등의 징토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삭출되었다.³¹

이처럼 「도당록」 인사가 노소에게 번갈아 독점되어 자파의 당론을 두둔하는 언관의 재생산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이들에 의해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홍문관에 대한 영조의 인식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기한 바 이양신의 예를 비롯하여 영조는 자파의 당론을 대변하던 홍문관원들을 일거에 파출하거나³², 경연의 직무를 맡고 있는 홍문관원들이 당습에 빠져 임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연을 폐하기도 했다.³³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며 붕당의 발호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던 영조는 당파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홍문관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키워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의 즉위 이후 이루어진 홍문관원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 당론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조의 비판적 인식은 당시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한 위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홍문록』 인사의 폐해는 이미 숙종 연간 붕당의 폐단과 맞물려 심화되었으며, 오로지 당색에 따라 인선이 좌우되고 있다는 강한

28 『英祖實錄』 3년(1727) 7월 5일 1번째 기사.

29 『英祖實錄』 5년(1729) 2월 5일 2번째 기사; 『英祖實錄』 5년(1729) 2월 28일 1번째 기사.

30 『英祖實錄』 6년(1730) 8월 27일 1번째 기사.

31 『英祖實錄』 5년(1729) 7월 28일 1번째 기사.

32 『英祖實錄』 3년(1727) 7월 1일 3번째 기사.

33 『英祖實錄』 5년(1729) 8월 9일 2번째 기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³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영조 초반 시기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노소 양당이 자당 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창구로서 『홍문록』을 활용하는 병폐가 극에 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사제도의 난맥상이 초래되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홍문관원 선발 방식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 『홍문록』을 통한 홍문관원의 선발은 사대부의 공론에 근거하여 인선을 시행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실록 기사는 이와 같은 홍문관 인사제도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다.

『홍문록』은 국가의 중대한 인선으로서 즉 옛날의 집현전입니다. 그 선정은 본관에서 마련하여 선택해 뽑아서 이조에 옮기면, 이조가 마감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마감하여 비로소 입선(入選)을 허락하는 것이니,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조로 하여금 천단하여 의망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기록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그릇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³⁵

이같이 정3품 부제학을 포함한 홍문관 관원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거듭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 영선(瀛選)을 마감했던 것은 홍문관 관원과 의정부 대신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공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인선 방법이었다. 이는 성종 연간에 원상을 포함한 공신 세력이 장악했던 인사 방식을 개선할 방편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 견제 수단으로서 홍문관에 부여된 특권이 영조 연간에 이르러서는 당여(黨與)를 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34 『肅宗實錄』 29년(1703) 11월 27일 1번째 기사 참조. 숙종 연간 정치세력의 동향과 연동한 홍문관 인사의 폐단에 대해서는 임성자, 「숙종대 홍문록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참조.

35 『中宗實錄』 5년(1510) 11월 21일 4번째 기사.

IV. 이조낭선 개혁과 홍문관원의 선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 대 초반의 홍문관은 독립적인 관원 선발 방식을 하여받았던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각 붕당의 정치세력 재생산 창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숙종 연간에 비롯되어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같은 폐단은 영조가 홍문관원 인선 방식을 당론이 발호하는 연원으로 인식하고 홍문관을 비롯한 언론제도 전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 계기로 작용했다.

1728년(영조 4)의 무신란(戊申亂)을 계기로 탕평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1729년(영조 5)에 단행된 기유처분 이후 신임옥사에 대한 노소 양당의 의리가 영조의 양시양비론에 의해 절충됨에 따라 탕평 세력의 집권 명분이 마련되었다. 이에 붕당을 타파하고 당습을 제거하는 것이 정국 운영의 제1원칙으로 표방되었다. 실제 이즈음을 전후로 한 연대기 사료를 통해서는 각 정파의 대표적 인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색을 명확히 시사하는 언동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이는 사당(私黨)을 비호하는 행위를 단호히 처벌했던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정도 관철된 데 따른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정황은 이 시기에 작성된 『홍문록』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표5-1727~1729년 권점자·입록자 내역³⁶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
| 정미록 (1727. 12. 17.) 「본관록」 | 작목 | 부제학 | 소론 | 송진명 | 명단 | 4점 | 소론 | 조현명 |
| | | 부응교 | 소론 | 정석오 | | 4점 | 소론 | 박문수 |
| | | 교리 | 소론 | 이광보 | | 4점 | 소론 | 서명빈 |
| | | 부교리 | 소론 | 조진희 | | 3점 | 소론 | 윤동형 |
| | | . | . | . | | 3점 | 소론 | 조명교 |
| | | . | . | . | | 3점 | 소론 | 신치근 |
| | | . | . | . | | 3점 | 소론 | 조적명 |
| | | . | . | . | | 3점 | 남인 | 홍경보 |
| | | . | . | . | | 3점 | 소론 | 윤상백 |
| | | . | . | . | | 3점 | 소론 | 임수적 |
| . | . | . | 3점 | 소론 | 이종성 | | | |
| 무신록 (1728. 1. 27.) 「도당록」 | 작목 | 영의정 | 소론 | 이광좌 | 명단 | 6점 | 소론 | 조현명 |
| | | 좌의정 | 소론 | 조태억 | | 6점 | 소론 | 서명빈 |
| | | 행이조판서 | 소론 | 이태좌 | | 5점 | 소론 | 윤동형 |
| | | 우참찬 | 소론 | 김시환 | | 5점 | 소론 | 조명교 |
| | | 이조참판 | 소론 | 윤순 | | 5점 | 소론 | 신치근 |
| | | 이조참의 | 소론 | 윤혜교 | | 5점 | 남인 | 오광운 |
| | | 이조정랑 | 소론 | 여선장 | | 5점 | 소론(?) | 권부 |
| | | . | . | . | | 5점 | 소론 | 조적명 |
| | | . | . | . | | 5점 | 소북 | 윤휘정 |
| | | . | . | . | | 5점 | 소론(?) | 한사선 |
| | | . | . | . | | 5점 | 남인 | 홍경보 |
| | | . | . | . | | 5점 | 소론 | 박문수 |
| | | . | . | . | | 5점 | 소론 | 정우량 |
| | | . | . | . | | 5점 | 소론 | 윤상백 |
| . | . | . | 5점 | 소론 | 김상성 | | | |
| . | . | . | 5점 | 소론 | 서종옥 | | | |

36 연대기 사료의 기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통해서도 『홍문록』에 기록된 인물의 당색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당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 기호를 부기했다.

| 명칭 | 구분 | 관직 | 당색 | 성명 | 구분 | 결과 | 당색 | 성명 |
|-----------------------------------|----|------|----|-----|-----|----|-------|-----|
| | | . | . | . | | 5점 | 소론 | 임수적 |
| | | . | . | . | | 5점 | 소론 | 권혁 |
| | | . | . | . | | 5점 | 소론 | 이종성 |
| | | . | . | . | | 5점 | 소론 | 이현모 |
| 기유록 (1729. 7. 29.) 「본관록」 | 작목 | 부제학 | 소론 | 윤혜교 | 명단 | 5점 | 소론 | 이종백 |
| | | 응교 | 소론 | 서명빈 | | 4점 | 소론 | 이춘제 |
| | | 교리 | 소론 | 조적명 | | 4점 | 노론 | 조상경 |
| | | 부교리 | 소론 | 윤광익 | | 4점 | 노론(?) | 정익하 |
| | | 부수찬 | 소론 | 정우량 | | 4점 | 소론 | 유엄 |
| | | . | . | . | | 4점 | 소북 | 임정 |
| | | . | . | . | | 4점 | ? | 이현보 |
| | | . | . | . | | 4점 | ? | 정도은 |
| | | . | . | . | | 4점 | 노론 | 이흠 |
| | | . | . | . | | 4점 | 노론 | 심성희 |
| | | . | . | . | | 4점 | 소론 | 윤광운 |
| | | . | . | . | | 4점 | 남인 | 이구휴 |
| | | . | . | . | | 4점 | 노론 | 정홍상 |
| | | . | . | . | | 4점 | 소론 | 엄경하 |
| . | . | . | 4점 | ? | 심성진 | | | |
| 기유록 (1729. 윤7. 8.) 「도당록」 | 작목 | 좌의정 | 소론 | 이태좌 | 명단 | 5점 | 노론 | 이흠 |
| | | 우의정 | 소론 | 이집 | | 5점 | 소론 | 윤광운 |
| | | 이조판서 | 소론 | 조문명 | | 4점 | ? | 이만유 |
| | | 우참찬 | 소론 | 김동필 | | 4점 | 노론 | 조상경 |
| | | 이조참판 | 소론 | 송성명 | | 4점 | 노론 | 황정 |
| | | 이조좌랑 | 소론 | 정우량 | | 4점 | 소론 | 유엄 |
| | | . | . | . | | 4점 | 소론 | 이종백 |
| | | . | . | . | | 4점 | 소북 | 임정 |
| | | . | . | . | | 4점 | 노론 | 심성희 |
| | | . | . | . | | 4점 | 소론 | 조한위 |
| | | . | . | . | | 4점 | 노론 | 정홍상 |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신난 이전에 작성된 정미록 「본관록」과 무신록 「도당록」은 대부분 소론 혹은 소론 탕평계열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그 사이 비소론계 인사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유처분 이후에 작성된 『홍문록』을 살펴보면, 권점자는 대부분 소론 및 소론 탕평계 인사들인 반면 입록자들 가운데는 당색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노론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5〉에 기록된 인물의 당색을 전수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홍문관원 인선 방식의 특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국의 추이에 따라 『홍문록』 입록자가 특정 당색으로 일변했던 이전의 경향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실제 이 시기에는 각 정파의 의리를 강하게 고수하는 준론 세력보다는 온건파에 속하는 완론(緩論) 인사들이 주로 등용되었다. 이들은 봉당 자체의 현안보다 탕평의 부식을 더 중요시했던 정치집단이었다. 단, 준론 세력 중에서도 탕평의 입장을 존중하는 인사들도 일부 존재했다. 영조는 대체로 이들 준론탕평론자와 완론 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용하여 봉당 간 의리를 조제하고 인재를 보합하는 탕평을 시행함으로써 정국 안정과 군주 권 강화를 꾸준히 모색했다.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봉당의 폐습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정치, 곧 공론에 의해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영조는 ‘의리주인’으로서 사대부의 공론을 부정하고, 공론에 기반한 봉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로써 구축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관료제를 강화하고 직업적 관료를 양성하고자 했다.³⁷

이처럼 영조는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의리 소재는 곧 국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임했던 인물이었으므로, 영조 연간의 탕평은 국왕 위주의 정국

37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4), 133쪽.

운영을 막아 온 근본적인 원인인 봉당 일소를 기치로 하여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탕평의 최종적인 목적은 봉당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정치구조 자체를 개편하여 새로운 정국 운영 방식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 같은 개혁의 기조는 봉당의 폐습을 심화·고착시켜 온 언론제도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³⁸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영조 연간의 인사제도 개혁 사례를 개관했을 때, 홍문관 인사제도 자체가 크게 개정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영조는 완성된 『홍문록』을 직접 살핀 후 입록자 가운데 탕평의 의리를 거스르고 당론을 비호했다고 판단한 인물을 산삭하거나³⁹ 중비(中批)를 통해 홍문관원을 직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홍문관 인사를 통제하기도 했다.⁴⁰ 아울러 홍문관 관원들과의 경연에서 『주례(周禮)』 등의 강독을 통해 왕권 중심의 제도개혁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⁴¹ 이와 같은 영조의 조치는 비록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그 개정 내용이 분명치 않은 편이다. 오히려 영조가 홍문관 인사제도의 근원적인 개혁을 원치 않았다는 점은 1749년(영조 25)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홍문록』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조 참의 조현명은 “한림천거제(翰林薦擧制)를 혁파함으로써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남인인 남태회(南泰會), 채제공(蔡濟恭) 같은 사람을 얻을

38 이상 영조 중반부 탕평 정국에 대한 서술은 이태진·김백철 편,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하』(과주: 태학사, 2011)에 수록된 다음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 정비」(과주: 태학사, 2011);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제 111권(1986).

39 『英祖實錄』 20년(1744) 5월 19일 4번째 기사.

40 『英祖實錄』 40년(1764) 8월 13일 2번째 기사.

41 우경섭, 앞의 글(1998), 160~162쪽.

수 있었으니, 이조 참의와 『홍문록』의 선발까지 혁파한다면 당론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홍문관원 역시 한림의 예에 따라 권점과 소시(召試)를 통해 선발할 것을 주장했다.⁴² 그러나 영조는 “이렇게 되면 물을 막는데 동쪽에서 막으면 서쪽에서 터지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법을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옥당(玉堂)은 임금이 강학할 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 소시할 수 없다.”⁴³라고 하여, 『홍문록』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홍문관이 정치세력을 재생산하는 연원임과 동시에 우문 정치의 조력자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기에 단순히 그 특권을 해체하고 인선을 평준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조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스스로를 ‘만학(晩學)’이라고 인식한 가운데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하여’ 경연(經筵)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영조의 의지가 은연중 드러난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영조는 홍문관 인사의 부분적인 폐단은 시정하고자 하면서도 임금의 강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관료의 선발 가능성은 유지하고자 기존의 인선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데, 영조 연간 『홍문록』에 이름을 올린 인물의 출신 과시(科試) 내역을 통해서도 이 같은 추론을 방증할 수 있다.

42 『英祖實錄』 25년(1749) 7월 28일 1번째 기사.

43 『英祖實錄』 영조 대왕 행장; 『承政院日記』 英祖 25년(1749) 7월 28일.

44 『英祖實錄』 13년(1737) 2월 27일 1번째 기사, “敎曰 在上者雖倦學 在下者其宜開導 而以予晚學 志在講討 近日春煦漸長 而玉署之門長鎖 法講之開無期. 清燕之時 欲問經史 混默而止者多矣. 求諸往牒 豈有如許時乎? 洪景輔之譏斥入直玉堂 已知無義 而互相違牌 徒傷事體. 新除儒臣 自政院申飭 俾卽應命 以開經筵”.

표6-1725~1776년 『홍문록』 입록자 출신 과시(科試) 내역

| 출신 과시 | 인원(명) | 비율(%) | 문과 전체 | 인원(명) | 비율(%) |
|----------|-------|-------|----------|-------|-------|
| 式年試 | 147 | 12 | 式年試 | 760 | 35 |
| 慶科 | 974 | 81 | 慶科 | 1,433 | 65 |
| 기재 사항 없음 | 79 | 7 | 기재 사항 없음 | - | - |
| 총원 | 1,200 | 100 | 총원 | 2,193 | 100 |

〈표6〉은 1725~1776년 사이 「본관록」과 「도당록」에 입록된 자들의 출신 과시 내역을 전체 문과 급제자의 출신 구성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식년시 급제자의 비중은 적고 경과 출신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식년시에는 주로 향인(鄕人)들이 응시하고 경인(京人)들은 대부분 경과에 응시했다는 사실, 문과제도 개혁을 통해 형식화된 식년시를 개선하고 급제자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감안했을 때⁴⁵ 홍문관원 선발 시 여전히 상대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경과 출신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졌던 경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홍문관 개혁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조 연간에 진행된 이조낭선 개혁의 큰 흐름과 연동하여 홍문관원 선발 방식의 소소한 변화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1741년(영조 17)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郎選釐革節目)」의 반포와 그로 인한 홍문관의 위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영조 중반 탕평 정국을 이끌던 영의정 김재로, 좌의정 송인명, 우의정 조현명, 이조판서 민응수, 참판 정우량이 함께 의논하여 정한 「이조낭선이

45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제58권 (2012).

46 이하의 銓郎法 개정과 그 영향에 대한 개관은 김현정, 앞의 논문(2022)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했다.

혁절목」의 반포는 전랑(銓郎)의 선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봉당의 폐단과 논란을 종식하고 그간 전랑이 행사했던 여러 특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⁴⁷ 전랑의 특권은 크게 자대권(自代權)과 당하관(堂下官) 통청권(通淸權)으로 대변되는데, 우선 자대권은 전랑이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1487년(성종 18)부터 시행되어 이후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하관 통청권은 특정 관원 후보자가 해당 관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랑이 판단하는 것으로 곧 전랑이 관원 인선 시 후보자의 의망(擬望)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전랑이 이처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 역시 커지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영조 초반 전랑직을 둘러싼 봉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사제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게다가 실낭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낭청을 차출하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면서 전랑이 자신의 특권만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조는 전랑이 이조낭관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전랑 선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마련된 「이조낭선이혁절목」 9조에는 전랑 자대권과 당하관 통청권을 비롯하여 그간 전랑이 행사했던 특권 전반에 걸친 개정안이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 영조는 전랑이 이조낭관으로서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들고 전랑직을 둘러싼 경쟁, 갈등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당상관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최종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이조 내에 관료체제의 상하관계를 확립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전랑 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홍문관 인사와 연동된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절목의 1조에 기재된 “신록(新錄) 때에 이조록

47 『英祖實錄』 17년(1741) 4월 22일 2번째 기사.

(吏曹錄) 및 낭관이 주장하여 통망(通望)하던 규례를 이제부터 혁파한다.”는 조치는 「본관록」 입록자 가운데 이조전랑 후보자를 선발하던 관행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홍문관 관원의 전랑직 진출은 이미 성종 대부터 이루어졌으므로⁴⁸ 이 조항은 『홍문록』 입록자 가운데 전랑 후보자를 의망하는 오랜 관행을 철폐하는 중대한 조치였다. 실제 절목이 반포된 이후 시기에 작성된 영조 연간의 『등영록(登瀛錄)』에서 ‘이조록’이 작성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조항에 의거하여 1743년(영조 19) 전랑 후보자 자격이 사헌부와 사간원을 거친 관원으로까지 확대된 사실이 있다.⁴⁹ 이 같은 전랑 후보자 자격의 변화는 홍문관과 사헌부·사간원 그리고 이조낭관 사이의 사로(仕路)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전에는 대부분의 관원이 『홍문록』에 입록된 이후에 전랑에 제수되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전랑에 제수된 이후에 『홍문록』에 입록되는 방식으로 당하관의 사로가 변화했다. 또한 전랑을 역임한 관원 중 2/3에 달하는 대다수의 인원이 『홍문록』에 입록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통해서도 이전 시기에 비해 전랑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홍문관과의 인사 교류 또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절목의 8조에 기재된 “비록 시임(時任)인 옥당이나 춘방(春坊)의 관원이라 하더라도 구애하지 말고 비의(備擬)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시임 홍문관과 세자시강원의 관원이라도 전랑에 의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조 연간 언론제도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그간 언관들이 누리던 특권은 상당 부분 철폐가 되고 부적절한 근무 관행 역시 ‘정상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홍문관은 고유의 특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유지했다. 이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본관록」과 「도당록」을 모아 정리한 『등영록』의 내용을 개관했을 때, 두 목록을 병렬하여 수록하기 시작한 1574년부터

48 최이돈, 「16세기 낭관권의 형성과정」, 『한국사론』 제14권(1986a), 15~16쪽.

49 『承政院日記』 英祖 19년(1743) 7월 6일.

1891년까지 『홍문록』 작성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물론 홍문관원의 인선 방식과 직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정황이 포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홍문관의 위상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청요직의 상징과도 같았던 전랑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 도홍문관의 위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는 역시 언론기구임과 동시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던 홍문관의 특수한 위상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왕 스스로가 ‘의리주인’이 되어 정국을 통할하는 탕평 정치 시행에 있어 홍문관 특권의 해체와 인선 평준화가 가져다줄 득실을 면밀히 따진 결과가 아닐까 한다.

V. 맺음말

이상의 본문에서는 17~18세기 조선 정치사를 다룬 기왕의 연구 성과와 주요 입론에 의지하여 영조 연간에 진행된 탕평 정치의 흐름 속에서 홍문관 인사제도의 추이를 재점검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홍문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영조 초반의 정국을 구성했던 주요 정파의 행보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탕평의 도입과 이조낭선 개혁을 추동한 본격적인 계기를 찾아보았다. 아울러 탕평의 기조를 부식하고 왕권의 신장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조낭선 개혁이 홍문관의 권한과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위와 같은 고찰의 결과 한국을 통한 특정 정파의 집권 과정에서 홍문관을 통한 봉당의 재생산 구조가 신속히 구축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절차

를 통해 기용된 인사들이 반대파에 대한 논핵과 자파의 세력 기반 확장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홍문록』 인사가 노소에게 번갈아 독점됨으로써 홍문관이 자파의 당론을 두둔하는 언관의 재생산 창구로 활용되고, 봉당 간 대립이 격화되는 한 계기로 비화함에 따라 홍문관에 대한 영조의 인식도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영조는 권력의 견제 수단으로서 홍문관에 부여된 특권이 오히려 당론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다고 인식했으며, 이로 인해 홍문관을 비롯한 언관 인선 방식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게 되었다. 영조가 추구했던 탕평의 최종적인 목적은 봉당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정치 구조 자체를 개편하여 새로운 정국 운영 방식을 구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개혁은 봉당의 폐습을 심화하는 중요한 요인인 이조낭선 방식을 ‘바로잡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영조의 치세 내에 홍문관 인사제도 자체가 크게 개정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영조는 『홍문록』 입록자를 산삭하거나, 중비를 통해 홍문관 인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으며, 경연 내용 변화를 통해 왕권 중심의 제도개혁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등 홍문관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렇게 영조 연간 홍문관의 인사제도가 고유의 특성과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홍문관이 정치세력을 재생산하는 연원 임과 동시에 우문 정치의 조력자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기에 단순히 그 특권을 해체하고 평준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조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국왕의 정국 운영을 보좌할 수준 높은 관료의 선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기존의 홍문관원 선발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다.

영조 연간 이조낭선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그간 이조전랑이 누리던 특권은 상당 부분 철폐가 되고 부적절한 근무 관행 역시 ‘정상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홍문관은 고유의 특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유지했으며, 이는 언론기구임과 동시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던 홍문관의 특수한 위상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왕이 '의리주인'이 되어 정국을 통할하는 탕평 정치 시행에 있어 홍문관 특권 해체와 인선 평준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弘文館志』. 『登瀛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2. 단행본

김성운,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파주: 지식산업사, 1997.

김자현, 『왕이라는 유산: 영조와 조선의 성인군주론』. 서울: 너머북스, 2017.

이태진·김백철 편,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하』. 파주: 태학사, 2011.

이희환, 『朝鮮後期黨爭研究』. 파주: 국학자료원, 1995.

_____, 『조선정치사』. 서울: 해안, 2015.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 서울: 일조각, 1997.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성남: 신구문화사, 2020.

3. 논문

김세봉, 「朝鮮時代 黨派 分類表」. 『동양고전연구』 제1권, 1993, 263~304쪽.

김현정, 「17~18세기 銓郎制 운영과 1741년 銓郎法 개정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101권, 2022, 177~222쪽.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 2020, 197~238쪽.

_____, 「조선후기 이조전랑의 인사실태와 정치적 위상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제86권, 2022, 197~243쪽.

남지대, 「조선후기의 당쟁과 청요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박광용,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한국사론』 제10권, 1984, 177~271쪽.

_____, 「조선후기 당쟁과 정국운영론의 변천: 18세기~19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_____, 「肅宗代 己巳換局에 대한 검토: 黨論書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29권, 1996, 137~158쪽.

_____,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 정비」. 이근호(편), 『조선후기 탕평과 국정운영론』. 서울: 민속원, 2016.

- 박영준, 「홍문관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제58권, 2012, 3~37쪽.
- 우경섭, 「영·정조대 홍문관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제39권, 1998, 137~186쪽.
- 이근호, 「英祖代 蕩平派의 形成과 闕闕化」. 『조선시대사학보』 제21권, 2002, 107~136쪽.
- _____, 「조선시대 이조전랑의 인사실태」. 『한국학논총』 제31권, 2009, 179~207쪽.
- 이희환, 「肅宗과 己巳換局」. 『전북사학』 제8권, 1984, 127~167쪽.
- _____, 「庚申換局과 金錫胄」. 『전북사학』 제10권, 1986, 31~61쪽.
- _____, 「甲戌換局과 肅宗」. 『전북사학』 제11·12권 합집, 1989, 135~176쪽.
- _____, 「英祖代 蕩平策의 실상(上)」. 『전북사학』 제16권, 1993, 45~82쪽.
- _____, 「英祖代 蕩平策의 실상(下)」. 『전북사학』 제17권, 1994, 99~127쪽.
- 임성자, 「숙종대 弘文錄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경희, 「肅宗代 蕩平論과 '蕩平'의 시도」. 『한국사론』 제30권, 1993, 125~178쪽.
-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제56호, 1983, 27~66쪽.
- _____,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제111권, 1986, 63~111쪽.
-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제5권, 1970, 101~115쪽.
- _____, 「홍문록고」. 『대구사학』 제15·16권 제1호, 1978, 269~288쪽.
- _____, 「홍문관의 언관화」. 『조선시대사학보』 제18권, 2001, 35~61쪽.
- 최이돈, 「16세기 낭관권의 형성과정」. 『한국사론』 제14권, 1986a, 3~51쪽.
- _____, 「성종대 홍문관의 언관화 과정」. 『진단학보』 제61권, 1986b, 5~44쪽.
- 홍순민,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 『한국사론』 제15권, 1986, 129~199쪽.

국문초록

홍문관은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 삼사로 꼽혔으며 조선시대 정치제도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 관서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라는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가운데, 이를 조선 후기 역사의 흐름 위에서 구명하기 위해 영·정조 연간에 추진된 이조낭선 개혁 개혁과 홍문관의 위상 변화에 주목했다.

우선 『홍문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각 시기별로 정국을 주도했던 주요 관료의 출사 연원과 실제 행보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각 정파 혹은 군신 간의 관계를 개연성 있게 설명할 근거를 찾아보았다. 아울러 탕평의 기초를 부식하고 왕권의 신장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조낭선 개혁이 홍문관의 권한과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환국을 통한 특정 정파의 집권 과정에서 홍문관을 통한 붕당의 재생산 구조가 신속히 구축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용된 인사들이 반대파에 대한 논핵과 자파의 세력 기반 확장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홍문록』 인사가 노소에게 번갈아 독점됨으로써 홍문관이 자파의 당론을 두둔하는 언관의 재생산 창구로 활용되고,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되는 한 계기로 비화함에 따라 홍문관에 대한 영조의 인식도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영조는 권력의 견제 수단으로서 홍문관에 부여된 특권이 오히려 당론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인식했으며, 이로 인해 홍문관을 비롯한 언관 인선 방식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 이 시기 단행된 이조낭선 개혁의 큰 흐름과 연동하여 보았을 때 홍문관원 인선 방식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 기타 관서와의 교류 양상 및 홍문관의 위상에도 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영조의 치세 내에 홍문관원 선발 방식 자체가 크게 개정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영조 연간 홍문관의 인사제도가 고유의 특성과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홍문관이 정치세력을 재생산하는 연원임과 동시에 우문 정치의 조력자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23. 3. 20.

심사일 2023. 7. 19.

게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홍문관(Hongmun-gwan), 홍문록(*Hongmunrok*), 영조(King Yeongjo),
연관 인선 개혁(Reform of the selection system for remonstrance officials)

Abstract

Reforms in the Selection System for Remonstrance Officials and the Changing Status of Hongmun-gwa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Kim, Sunghee

Hongmun-gwan was a very important offic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focuses on reforms in the selection system and the changing status of the Hongmun-gwan during the reigns of two Joseon kings, Yeongjo and Jeongjo.

First, based on the *Hongmunrok*, I identified the process of entering the bureaucracy and the activities of key bureaucrats who led the government in each period, and sought evidenc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and the king and his subjects. I also focused on analyzing how reforms in the selection of remonstrance officials, which were implemented to increase royal power, affected the power and status of Hongmun-gwan. These findings reveal that during a particular political party's rise to power, Hongmun-gwan quickly established a structure to consolidate the party's power, and that those appointed through this process were actively engaged in discrediting opponents and expanding their own power base. Moreover, as Hongmun-gwan became a vehicle for intensifying partisan confrontation, Yeongjo's perception of Hongmun-gwan began to deteriorate.

Yeongjo perceived that the privileges granted to Hongmun-gwan as a check on his power had become a means of favoring partisan positions, and felt compelled to reform the entire system of remonstrance officials' selection, including Hongmun-gwan. In fact, when 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extensive reforms to the selection system of remonstrance officials that took place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way officials of Hongmun-gwan were selected.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way Hongmun-gwan interacted with other government offices and the status of the Hongmun-gwan. It is noteworthy that Hongmun-gwan's personnel system itself was not significantly revised during the reign of Yeongjo. The fact that the personnel system of Hongmun-gwan remained largely unchanged during the reign of Yeongjo was due to the fact that Hongmun-gwan was not only a source of consolidating political power, but also a device to support royal power.